

## SAMC | LAW REVISION

### 1. 對美 철강제품 수출신고 시 철강협회 승인번호 기재하세요!

최근 개정된 「수출입 공고」로 5월 14일부터 철강제품(약 173개 품목)이 對美 수출 제한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국으로 철강제품을 수출하려면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세청은 對美 한국産 철강제품 수출 쿼터제 시행에 따른 '對美 수출제한 철강제품의 수출통관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5월 11일 전국세관에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수출자는 수출신고란 사항에 철강협회 수출승인서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동 협회 수출승인서를 전자 제출해야 한다.

[Read More](#)

### 2. 밀수행위 등 「관세법」 위반 사실 자진신고 시 벌금 50% 줄어

무역 관련자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람 등의 벌금 상당액을 대폭 감경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세관에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의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스스로 세액 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대한 감경(15%)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Read More](#)

### 3. 대만·태국·UAE産 PET 필름에 3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3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무역위원회 조사 결과 대만·태국·UAE産 PET 필름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해 해당 물품에 앞으로 3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CUSTOMS & TRADE TREND

### 1. 7월 1일부터 中 수입車·부품 관세 ‘최대 6%’로 인하

KOTRA 상하이무역관은 “5월 22일 중국 재정부가 완성차 및 부품 수입관세를 조정한다고 공고했다”며, “개혁개방의 확대와 공급 측 구조개혁의 추진, 자동차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소비자 수요 충족을 위해 올 7월 1일부터 관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세율 25%였던 135개 품목과 20%였던 4개 품목의 관세율을 15%로 조정하고 각각 8%, 10%, 15%, 20%, 25%였던 79개 품목은 6%로 조정한다.

[Read More](#)

### 2. 중국정부, 올 연말부터 고체폐기물 32종 단계적 수입 금지

중국정부가 폐선박, 폐차, 폐비닐 등 32종의 수입금지 목록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24종의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선언 이후 그 범위가 더 확대된 것이다. 중국의 수입 금지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도 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중국은 전 세계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수입해 재가공하는 ‘최대 쓰레기 처리국’이었지만, 시진핑 주석이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초를 내세우면서 앞으로 수입 금지 폐기물의 종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ad More](#)

### 3. 美, 한국産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면제

미국정부가 우리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수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는 EU, 호주, 캐나다 등 관세 잠정 제외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면제대상국으로 확정했으며, 나머지 국가에는 조만간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USTR은 4월 27일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며, 우리나라를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FTA TREND

### 1. 베트남, 원산지확인제도 도입, C/O 발급 쉬워진다

KOTRA 하노이무역관은 5월 22일 “베트남정부가 원산지관리규정 내에 원산지확인제도 관련 조항과 양식을 신설했다”며, “베트남에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원산지 입증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우리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원산지확인제도 도입으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는 베트남에서 수출물품 재료 및 반제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재료의 생산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해 원산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Read More](#)

### 2. 2018년 EU 회원국 자국 통화상 금액 확인하세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따라 2018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을 5월 11일 공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체코 (165,000/33,000/14,000), 헝가리 (1,849,000/370,000/154,000), 루마니아 (27,100/5,400/2,300)의 금액이 일부 변경됐다.

[Read More](#)

### 3. RCEP 타결 및 한·중·일 FTA 추진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8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정부 및 경제계를 만나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강화,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및 한국청년 채용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 분야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타결을 위해 양국이 합리적·실용적 절충안을 모색해 협상진전에 이바지하고, 한·중·일 FTA 협상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QUARANTINE TREND

## 1. 공인검사기관의 평균값 사용 시 영양표시 허용오차 적용 예외

식약처는 5월 3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영양성분 표시값에 대한 허용오차 규정이 있으나, 원료의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어 영양성분 허용오차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영양성분값을 표시한 경우 허용오차 적용을 예외로 하는 법안을 신설했다. 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Read More](#)

## 2. 중국산 향미유, 검사명령대상 추가 지정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73호, 2017. 9. 1.)에 따라 중국산 향미유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추가로 지정하여 공지했다. 지정사유는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으로 검사항목은 '벤젠'이다.

[Read More](#)

## 3.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 안내

2016년에 등록한 해외제조업소 및 수입자에 대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기간을 확인하여 만료일 내 등록이 완료되도록 확인이 필요하다.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한달 전으로 만료일은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등록 갱신 주체는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이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주의 할 점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수출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소재지가 아닌 공장 소재지를 등록해야 한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AMC | CERTIFICATION TREND

### 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전기준 개정

2020년 9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단전지는 안전인증대상으로 지정된다.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 안전사고빈도 위험수준이 변하므로 안전관리대상품 목별관리수준의 적정성을 주기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서 위해성평가결과 1개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6개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수준을 하향조정 하였다. 유아용, 아동용 신발규격에 적용되는 리튬폴리머는 완충 시, 셀 당4.2V이기 때문에, 위의 입법예고 단전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Read More](#)

### 2. 국가기술표준원, 유아동복·전기찜질기등 60개 제품 리콜명령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3일 유아동복·전기찜질기등 60개 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명령했다. 리콜대상 물품은 아동용섬유제품(운동화;3개)으로 프탈레이트가소제(1.3~261.3배), pH(28~30.7%)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 물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리콜 대상 제조사는 프로스펙스 등으로 아토피 유발 가능성이 있는 ph가 초과 검출되었다. 리콜수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Read More](#)

### 3. 섬유제품KC 표시방법 개정

2018년 1월 1일 이후로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을 표시할 때 사용연령을 기재해야 한다.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관리법 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인 경우 인증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같이 기입해야 한다. 그리고 유아용 섬유제품 표시 개정으로 안전확인 제품 표시에 추가된 기입사항에는 치수, 판매자 주소 및 연락처, 취급상 주의사항, 사용연령이 있다. 또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 표시로 인증마크를 표기해야 하며 아동용인경우 사용연령 기재가 필요하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